

여성들에게 희망을

2018년 한국여성재단 <성평등사회조성사업>

-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신생단체지원 분야 -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 |

- 신생여성단체 지원 -

1. 사업명

- 신생여성단체 지원

2. 지원사업 취지

한국여성재단 내 민간여성기금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성평등사회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사회 여성공익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지원 내용

1) 지원사업 구분

지원분야	지원대상	사업추진기간	지원예산(원)
신생단체 지원사업	비영리 신생여성단체	2018년 2월 ~ 2018년 11월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및 단체 운영비 (인건비 포함) 지원 • 최대 500만원

2) 신청사업 내용

-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신생여성단체 지원**
- 사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 신생여성단체 목적사업비 지원
 - :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자유주제 사업
 - : 여성주의에 기초한 창의적인 사업
 - : 단체 기반 조성을 위한 단체 고유목적 사업

- 신생여성단체 운영비 지원
 - : 단체 운영비 지원
 - : 단체 인건비 지원

4. 신청대상

- 비영리 신생여성단체
 - ※ 신생여성단체란?
 - 단체의 설립목적 및 정관상 주요사업에 성평등 사회 실현을 포함하고 있는 여성단체
 - 설립한지 3년 이내, 1명 이상의 상근자를 둔 여성단체
 - ※ 미등록 여성단체(시설)도 신청 가능
단, 미등록 단체(시설)의 경우 2년 이상의 사업실적과 전담인력이 확보 必

<p>※ 신청제외 단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사회단체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시설 -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포함) 및 일반협동조합 - 학술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 - 대학 내 부설기관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5. 신청사업 형태

구분	세부내용
신규사업	. 본 사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연속(동일)사업	. 2017년에 지원 된 '신생단체 지원사업'의 연속 사업 (※ 3년 연속(동일) 사업 신청 가능)

6. 신청방법

- ① 접수기간 : 2017년 11월 6일(월) ~ 12월 1일(금)
 - ※ 12월 1일(금), 오후 5시 우편 도착분에 한함(우편 소인 기준 아님)
 - ※ 쿼서비스 이용 접수,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
- ② 접수방법 : **온라인과 우편 모두 접수되어야 신청 완료**
 ※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능**
- ③ 접수처 : (040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김수현 앞

④ 제출서류

※ 아래 두 가지 방법(온라인과 우편) 모두 접수되어야 신청 완료

구분	세부내용
온라인 접수	① 온라인접수 바로가기 클릭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접수방법] i) 단체(기관) 회원가입 → ii) 2018년 한국여성재단 공모사업 클릭 → iii) 사업 신청 정보 기재 → iv) 관련 서류 일체 파일 첨부 → v) 사업 신청하기 클릭 </div> ② 관련 서류 일체 온라인접수 시 파일 첨부 ※ 첨부파일명 : 2018_신생단체_단체명.hwp
우편 접수	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4부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사본 1부

7. 공모 일정

추진시기	내 용	비 고
2017년 11월 6일(월)	사업 공고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고
2017년 11월 6일(월) ~ 12월 1일(금)	접수	※ 12월 1일(금), 오후5시 우편 도착분까지
2017년 12월 4일(월) ~ 2018년 1월 31일(수)	사업 심사 (사무처/서류/면접)	※ 1차 서류심사 통과 단체에 한하여 2차 심사 진행
2018년 2월 중순 (예정)	결과 발표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및 개별 안내
2018년 2월 중순	교부금신청서 제출	※ 최종 선정 이후 진행
2018년 2월 중	네트워크 워크숍	
2018년 2월 ~ 11월	사업 진행	
2018년 11월 20일(화) 이내	최종보고서 제출	

※ 사업 신청 시, 교부신청서 제출, 실무자 워크숍,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등의 일정을 사업기간에 포함하여 계획서 작성.

8.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지원 제외 대상 사업

- 지원사업과 관련,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
-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
-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기념행사, 후원사업
-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양도 또는 하도급 하는 사업

② 사업신청의 제한

- 2015년~2017년 3년 연속 성평등사회조성사업(자유공모, 기획공모, 여성과 아동 폭력, 신생단체지원 모두 포함)으로 지원 받은 단체 및 사업은 신청 불가
 ※ 2016년~2017년 2년 연속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 받은 사업의 경우 또는 2년 연속 지원받은 단체는 2018년도 공모사업에 신청 가능합니다.
- 단체별 신청 사업은 1개로 제한하며, 타 주제의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지부를 가진 전국규모의 단체의 경우, **지원 분야와 상관없이(자유주제, 신생단체지원, 여성이 안전한 세상만들기 지원) 중앙 및 지부를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까지만 신청 가능(※ 중앙 단체 및 지부 간 사전 확인 必)**
- 운영주체가 동일한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부설기관(센터, 상담소 등)을 포함하여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③ 예산 편성

-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는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
- 관리운영비 중 운영비(비품구입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의 경우 신청 지원금의 10% 범위 내에서, 인건비의 경우(해당 사업 전담인력에 한하여) 신청지원금의 20%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가능
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 운영 기본경비(인건비, 임대료, 경상운영비 등)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지 않는 단체만 신청 가능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9.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TEL.02-336-6385 / E-mail. free-hyune@hanmail.net